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이경숙¹⁾, 최정화²⁾, 김효철¹⁾, 강태선³⁾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¹⁾, 서울대학교 의류학과²⁾, 노동부 성남지청³⁾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Kyung-Suk Lee¹⁾, Jeong-Wha Choi²⁾, Hyo-Cher Kim¹⁾, Tae-Sun Kang³⁾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¹⁾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²⁾,
Seongnam District Office, Ministry of Labor³⁾

= ABSTRACT =

Objectives: To develop a model of a officia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We analyzed current Korean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Methods: For national management systems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protecting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s of farm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insurance and compensation act for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2)set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3)mandating the usage of safety devic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d equipments, (4)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at occur among farmers, (5)registering pesticides and assessing safety usage, (6)implementing safety training, (7)suppor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gricultural safe facilities etc.

Key Words : Management system,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 교신저자: 이경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88-2번지, 전화: 031-299-0470, 010-9903-1835,
팩스: 031-299-0428 E-mail: leeks@rda.go.kr

서 론

최근 국제화 무역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증가로 우리나라 농산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던 농업인들은 현재 경제적 생활안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에 따른 업무상재해와 질병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들과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농산업 정책들은 과거 농가 소득증대 위주의 농업 생산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에서 농업인의 복지 기반 확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농업인의 업무상재해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유도하며 건강한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재해 관리체계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들과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의 타 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 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관련법, 행정적

지원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조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발달의 역사적 배경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 사회, 경제의 발달에 따른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업병이 거론된 것은 6.25 동란 이후 황폐해진 국토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최영태 박사가 광산근로자의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사회에 알려질 때였으며 이는 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도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산업보건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부산으로 피난 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노총 설립 후 최대 규모였던 조선방직 근로자의 파업을 비롯하여 광산근로자 파업, 부산 부두 근로자 파업 등으로 한국전쟁으로 정지되었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을 부활시켜 정부가 합법적으로 노동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업구조에서 이러한 법을 적용할 사업장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사업형태는 1960년 5.16 사건 이후로 근로보건규칙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1963년 가톨릭 산업의학 연구소에서 전국 1,773개 사업장 148,358명의 근로자를 집단 검진하게 되면서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 조사에서 근로자의 직업 병 유병률이 1,000명당 1272명으로 나타났으며 14종의 직업병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민간정부로 이양하는 시점에서 선거 전략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혁정책의 하나로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시를 검토하였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의 실시는 포기하고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법을 실시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조성된 비용으로 산재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사

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70년 세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던 추세에 따라 당시 군사정부에서 여론 환기용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이후 정부의 무관심과 사업자 위주의 법적 용으로 사업장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1988년에는 직업병 증가와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로 노동부는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국내 산업보건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싹트기 시작한 1980년대 말로 당시 산업계에서는 초기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지닌 사업장외에도 현대적인 시설과 체계를 갖춘 사업장의 비중이 커지는 때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료진이 양산되고 전 국민의료보험성이 시행되면서 의료의 양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집단 건강검진이 더 이상 시혜적 성격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에서 만성적이고 기능적인 건강장애에 대한 진단도 내리지 못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능을 상실하게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강제적이며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1995년 초 부산 한진중공업 화재사건으로 19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경감 및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 사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생겨났다. 1995년 2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된 '물질 안전보건자료제도' 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추방하려는 노력은 초기에는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 등이 주도했으나 1987년 민주적 노동조합 건설 및 199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추방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제조업을 비롯한 비농업분야에서 업무상 재해문제에 관한 입법화는 산업재해문제가 보편화되기 전에 이미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산재보상 및 예방관계 규정들이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독립되어 제정되었고 198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표 1).

우리나라도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표 1.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제도의 발전과정

년도	법령 및 사업명	세부 내용
53	근로기준법 제정	노동자 산재의 사용자 책임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근로기준법의 별도 법제정
'63	노동자 건강검진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건강검진
'72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77	직장의료보험제도 실시	
'8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노동청 노동부로 승격
'83	작업환경측정방법 제정	
'84	진폐 예방과 치료관련법 제정	광업부문 진폐증 빈발로 인함
'91	산업안전관리공단 신설	
'00	산재보험가입의무화 확대	1인 이상 전 사업장

법의 제정과 시행이 사실 별개의 문제처럼 나타났으나 80년대 축발된 범사회적 민주화와 더불어 형식적으로 제정되었던 각각의 법들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발표되었고 직업병과 직업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진행되었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비농업부문에서는 직업에 의한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9장 7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자격 및 임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유해위험 예방조치로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보호구의 검정,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치 등의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보건관리로는 작업환경의 측정, 채용시 및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감독과 명령사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안전보건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 건강검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 기관의 지정 및 자격요건,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안전사고와 직업성 질환 등 산재 발생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신청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로 제출하는 방식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현황 및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채용시 건강검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등을 통한 직업성 질환자의 발견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자별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하고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르고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으며 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보험을 운영하며 재해 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 보고와 납부, 가입자 보험급여 징수, 보험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으로는 근로자가 속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농업 등 자영업은 상시 5인 미만 농업 사업을 적용하되 법인에 한하고 있다. 보험료의 지불 주체는 사업주로 해당 산업에 따라 보험료율과 임금액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차등 시행된다. 보험급여는 재해자의 재해 심각성 및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다. 지급대상 재해로는

안전사고 및 직업성 질환 등 업무상재해가 해당된다.

4.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 보험 사업을 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은 모든 어선이 해당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시설 설비, 농촌 어메니티 증진, 복합산업지원 등 농산어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95.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제도이므로 협조가 미온적이고 위촉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며 위촉시 사업주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1996. 12월 개정법에서 명예감독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 안전위원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활동을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독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ILO에서도 「근로자 안전위원에게 작업장 점검을 할 수 있고,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권고 제164호, 1981) 이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6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총 지역개발과 교육비 지원확대, 농촌지역 교원우대 등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 있으며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촌형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초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상의 법규와 그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표 2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사업은 전적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로자'에 제한하여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안전보건 행정체계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각 부처의 소관 업무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3은 정부 부

처별 농업인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 현황 및 관련 근거법을 요약·비교한 것이다.

1. 노동부

노동부는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 기준,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업대책, 고용정책 및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부에는 정책홍보관리본부 및 고용정책본부, 산업안전보건국, 국제협력국,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등을 두고 있으며(그림 1),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등을 두고 있다. 노동부의 주요 정책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사관계법, 제도의 선진화 추진, 노사

표 2. 농업인의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규제 및 해당부처 비교

관련 법규 및 제도	관련 내용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 대상이 근로자인 만큼 대다수 비법인 자영농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은 없음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 역시 법적인 '근로자'가 대상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맥락에서 농업인에 대한 적용 폭은 매우 협소함	노동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기존 수협 공제의 확대개념. 어업관련 재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상을 통하여 어업경영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음 ('04. 1. 1 시행)	해양수산부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이 농작업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됨. 기존 상해에 대한 보상에서 '04년부터 누적외상성질환과 특정 전염병에 대한 보상내용 추가됨	농림부 (농협)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함('04. 6. 1 시행). 14조, 15조에서 농업인 직업성질환과 사고에 관한 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 포함	농림부

표 3. 정부 부처별 농업인 업무상 재해 관련 업무 및 관련법 비교

정부 부처	농업인 안전보건관련 업무 및 특징	관련법 및 산하기관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및 산재보상업무 추진 ‘근로자’로 분류되는 농업인(1%)에 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부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 일환의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진행 되어옴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등록 및 품질인증 관리차원에서 매우 부수적으로 안전이 고려됨 농업 구조조정 소요비용 지원 차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 농촌경제연구원 등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차보건의료차원에서의 최소 의료인력 수급 국민복지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보조에 관한 실무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진흥 및 어업인 복지 증진 최근 산재법과 독립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수산업협동조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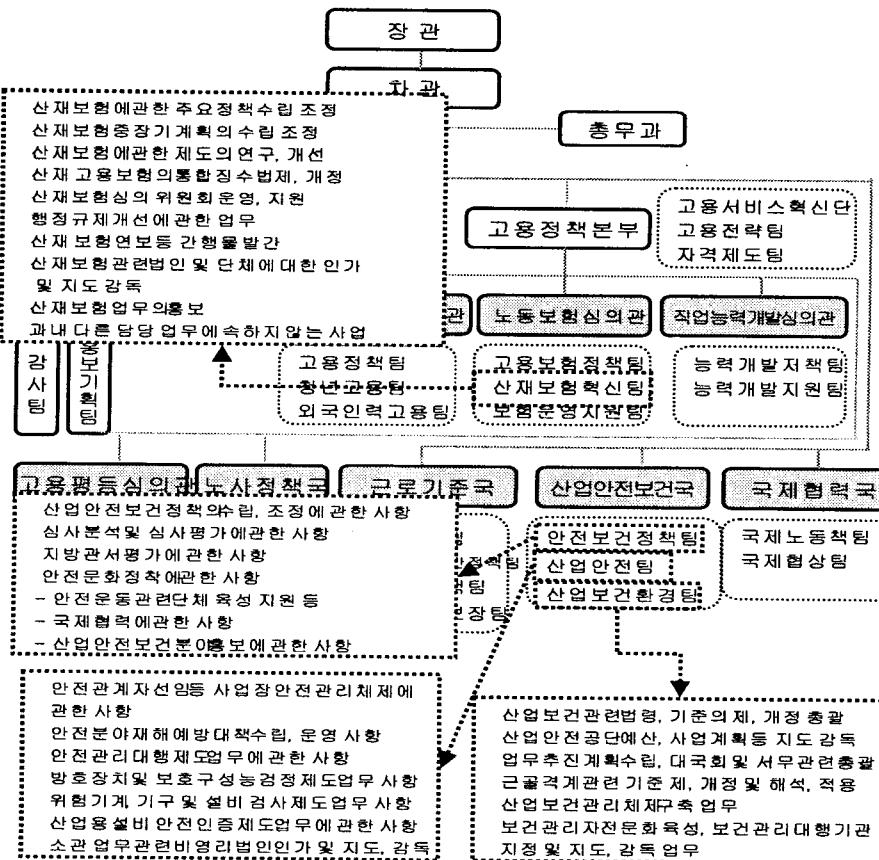


그림 1. 노동부 조직 및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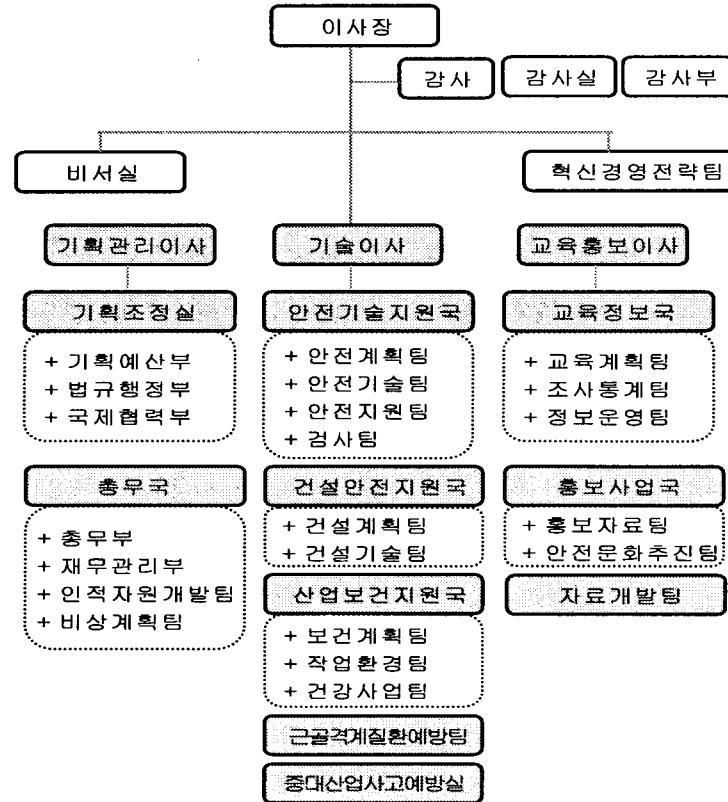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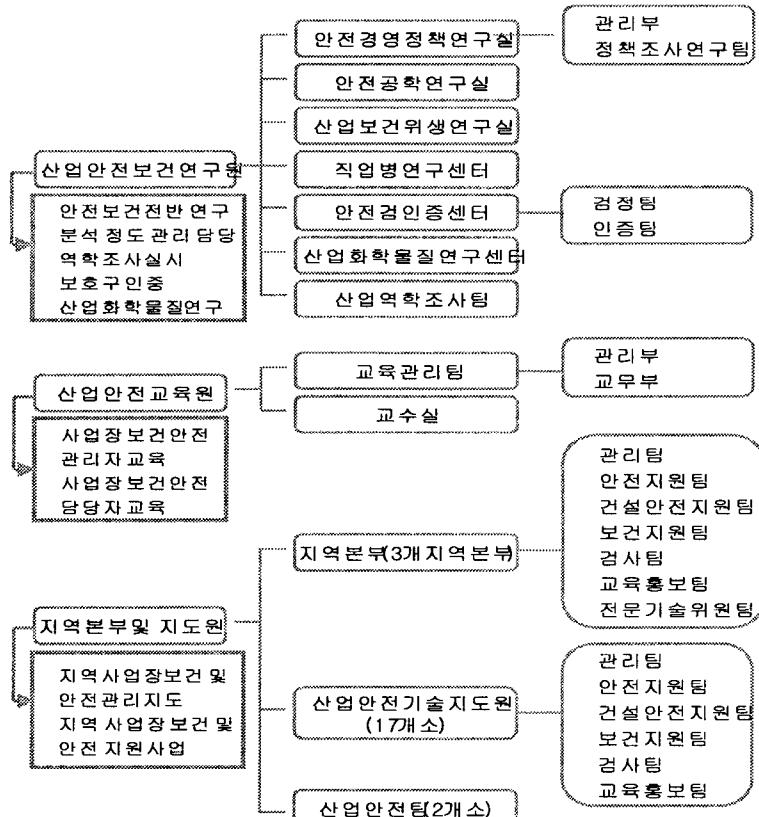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산업안전공단 소속기관의 조직 및 업무

정 대화체계 구축, 합리적 의식·관행형성 및 노사 자치주의 확립을 위한 일을 하며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취약계층별 고용추진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 확충, 고용 평등 사회 구현, 노동보험 확충 및 내실화, 근로계층간 격차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국에서 총괄하며 세부적인 업무상재해 예방 및 보상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인 ‘근로자’에 한정하며 산재 예방 및 보상 사업을 수행하므로 농업분야에서는 전체 농업인의 1% 수준인 2만명 정도의 임금근로자인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및 지도원을 두고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 그림 3). 공단의 주요 기능에는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교육,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유해·위험설비의 자체검사 대행, 사업장 설치·이전·변경 계획서의 기술검토, 사업장 재해 예방기술지도,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지원, 산업안전운동의 전개 등이 포함된다.

2. 농림부

최근 농림부는 균형발전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 틀을 마련하고 농업위주의 정책에서 농업·농촌정책을 종합하여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산업으로서 농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수출확대 등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사회보장 지원으로 농가부채경감, 직불제 확충, 농촌 활성화, 농촌복지개선, 협동조합개혁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에 제정하고 농림부 산하조직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와 함께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중에 농업인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농약 등 유해물질을 농자재로 취급하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건강지원 및 안전공제 사업은 농촌사회과가 수행하며 여성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지원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다(그림 4). 최근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중에는 농림어업인의 업무상재해보상을 위한 안전공제 지원강화 및 관련 규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농촌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보험 등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등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에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 개발된 농업과학 기술의 농가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가 해당된다.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관리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에 의해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품질관리, 농촌생활개선 차원에서 농작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을 살펴보면 농부증 실태조사,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및 농약중독 영향, 농작업별 에너지소비량 측정 및 노동 강도 분석, 근골격계 위험요인 평가표 개발, 농작업·생활환경 관리수준 진단표 개발,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인 측정 및 평가, 농작업 관련 질환 종합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하고 안전 관리 핸드북 등을 개발하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보조 도구 등을 개발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시범, 딸기 작업개선 보조 도구 시범 등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에는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업무상재해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가 수립되어 2006년부터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 개선, 농작업 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작업 안전 모델(Safe farm zone)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마을 건강관리실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표 4, 그림 4).

4.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방역, 의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복지, 취약계층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였으며 2005년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과제에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보건복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이 해당된다.

표 4.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련 연구사업

연구내용	주 요 성 과	시기	생산자료
노동부담 평가	• 농작업별 에너지대사량 측정 : 178작업 • 농작업별 온열작업환경 측정	'86~'01	• 활동별에너지 대사량표 발간('88, '94)
건강 실태 조사	• 농부증 및 축적피로징후실태 ('94~'99) • 비닐하우스 작업자 실태 ('90) • 농촌여성 노동·건강실태 ('91) • 농민체격·체력실태 ('93)	'90~'99	
건강 증진 기술	• 건강관리실 모델 개발 : 3유형 ('95) • 농작업체조개발:부위·작목별 10종('95~'96) • 운동프로그램 개발 : 4유형 ('96~'97) • 피로회복방법, 적정작업·휴식시간기준('93~'95)	'93~'97	• 건강관리실모델 설계도 ('96)
농작업 생력화	• 노동실태조사 : 시간·강도·패턴 • 작업시스템·보조장비 개발: 18종('88~'01) -딸기·버섯작업시스템, 과채류운반차 등 • 피복장비개발 : 10종 ('94~'01) -순잎따기장갑, 밭작업화, 축산작업복 등	'88~'01	• 농작업환경개선 사례집('95) • 농작업보조도구 사례집('01) • 특허등록 : 6종 • 산업체기술이전 : 6종
직업성 질환 및 유해요인 연구	• 근골격계질환실태·위험요인평가('99~'01) • 농약살포자 신경계·면역기계 영향('99~'01) • 축산작업장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인 평가 • 농업인 작업과 건강관리 웹시스템 ('00~'01)(http://farmwork.rrdi.go.kr)	'99~'03	• 농작업안전관리 핸드북 : 7종('03) • 프로그램등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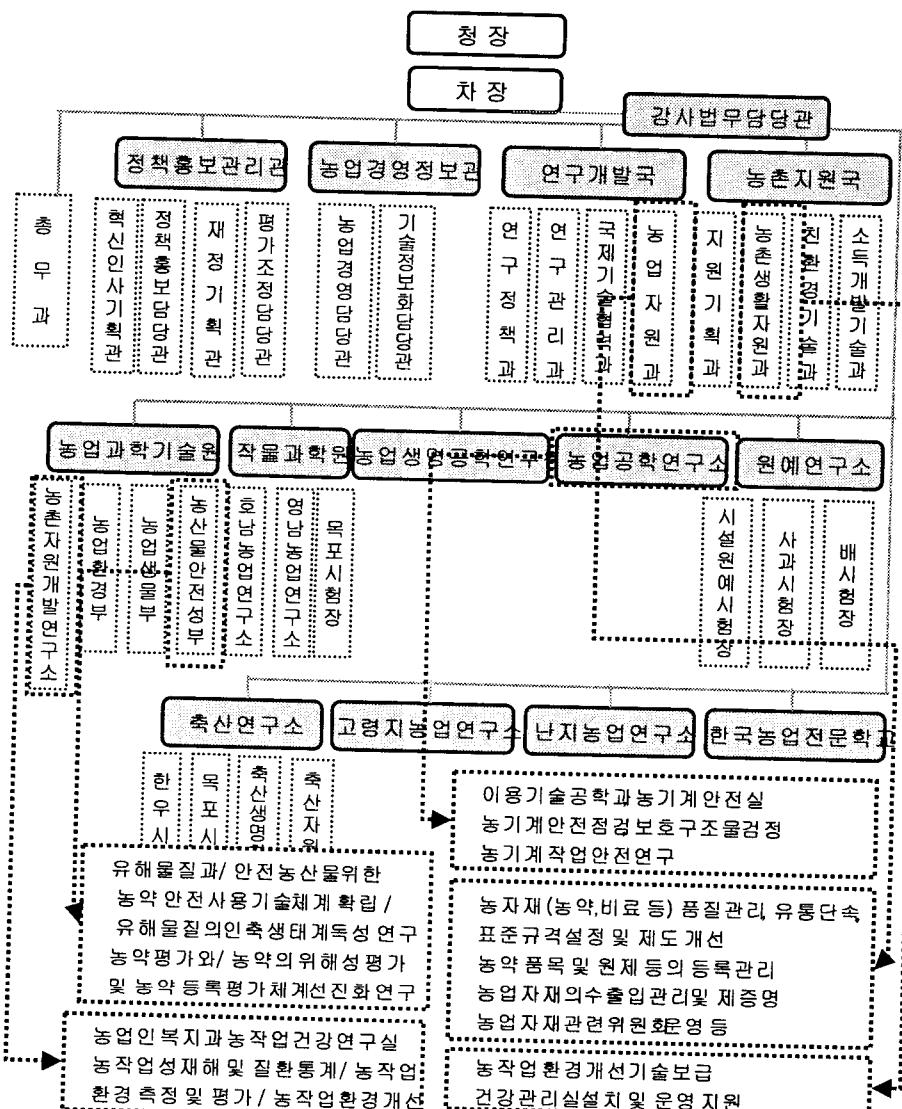


그림 4. 농촌진흥청 조직 및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동향분석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보건 및 복지제도의 기본 틀에 기초한 보건복지정책의 내실화 및 실증적 개발을 수행하며 고령화 등 특성별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보건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1차 보건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보건문제는 주로 열악한 의료접근성으로 진단하고 최소한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농업인 업무상재해의 관점에서 농촌지역 1차 보건의료 접근에 관한 전략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제 1차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공공보건 및 의료기반의 확충 및 응급체계의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 국민 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 · 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보건의료 · 사회보장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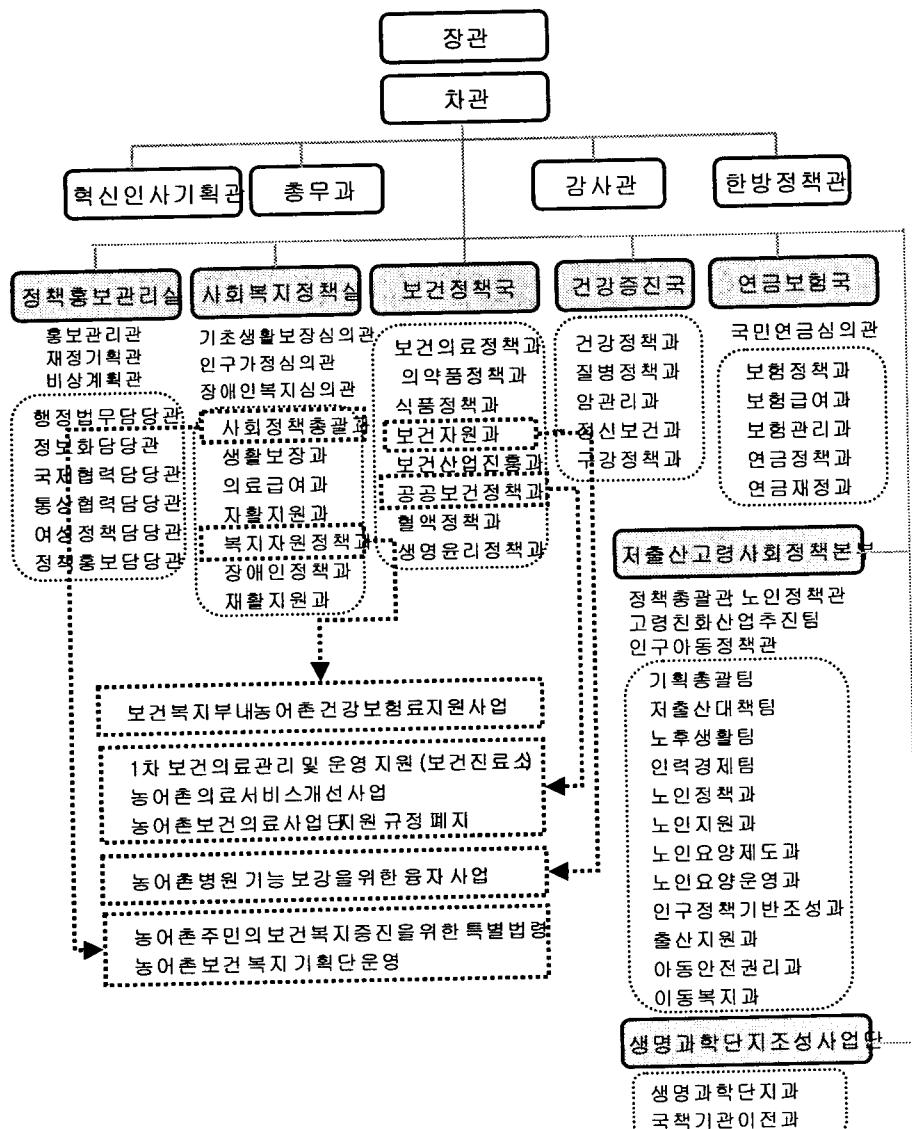


그림 5. 보건복지부 조직 및 업무

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주요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관련 정부위원회 지원 및 국민여론 수렴,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실시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 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다(그림 6).

농업인 업무상재해 지원

농업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농업인 안전공제는 국가가 일정 재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안전공제는 농기계 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등의 농작업재해시 사망과 장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사업으로 2004년부터 농작업으로 인한 일부 근골격계의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보상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안전공제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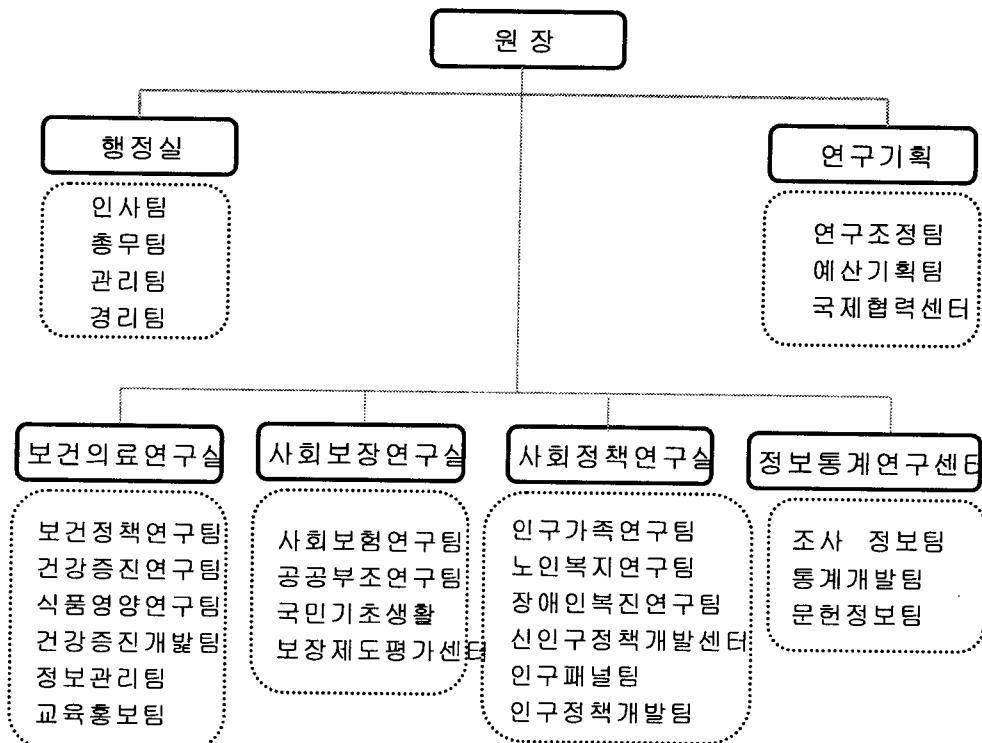


그림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직도

표 5. 농업인 재해공제의 예산반영 추이

(단위 : 억 원)

사업명	'98	'99	'00	'01	'02	'03
재해공제	72	72	72	72	72	80
안전공제	59	59	59	59	67	74
기계공제	13	13	13	13	5	6

용대상은 농협 조합원으로 1인계약과 부부계약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은 사망 및 재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고 농작업중 치료비 담보 특약 등이 있으며 보험료 지불주체로는 농업인,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해당되며 농업인은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율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일시불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 5에서 제시한 것처럼 70여억 원 정도의 정부 예산으로는 조합원 전부를 가입시키기 어려우며 현재는 전체 조합원의 28%정도만이 가입되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 만기 계약에 연간 보험료 50%를 국고, 30% 시비, 10% 농협 보조로 총 90%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안전공제의 임의지원 규정, 낮은 보상수준, 안전사고와 일부 직업성 질환에 제한된 보상 및 부족한 국가예산 지원으로 가입대상자 제한 등으로 인해 농작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반으로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가 사업장별 사업주 차등 부담 방식이므로 소규모 가족농이나 자영 농업인은 개인이 100%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 비등록 자영농업인을 제외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으나 관련 법들이 고용관계를 전제로 보호대상을 ‘노동자’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농업인은 결국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리상 문제로 인한 배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농업인에게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농약 중독사고, 근골격계 질환, 천식 등 농작업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속속 보고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물론이고 농업인 안전공제 역시 치료비, 입원비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보상금도 적어 농작업 재해자에 대한 재활, 소득손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조차도 농작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상내용이 안전사고에 치우쳐 있어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보상을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농업인안전공제를 비교해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인안전공제만 임의가입이고 나머지는 강제가입이며 안전공제는 보상에 있어서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을 배제하고 있다. 보험대상 재해도 2004년부터 누적성 외상질환의 일부만이 치료범위에 해당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농업인안전공제는 가입형태, 보상내역, 범위 등에서 다른 보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강제 가입을 도입하고 발생가능한 직업성 질환의 보상까지 보험대상을 넓히는 등 안전공제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등 작목별 조합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며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활동의 특징인 개방적인 작업장과 불규칙적인 작업조건, 임금산정의 어려움, 높은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관련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품앗이 및 가족농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의 확대 및 보상대상이 되는 질환, 사고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

표 6. 산재보험, 농업인안전공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비교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농업인안전공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연간)	자부담 : 보험료율 차등적용	자부담 50%, 부보조50% : 계약금액에 따라 고정적용	자부담 : 보험료율 차등적용, 톤급별 차등 정부보조	
보험금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장해급여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보험대상 재해	안전사고, 직업성 질환	안전사고, 일부 직업성 질환	안전사고, 직업성 질환	
가입 대상	상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	농협 조합원 (최대 부부관계에만 한정)	어선법 규정 어업인 (가족어업인 포함)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농협	수협	
가입 방법	강제 가입	임의의 가입	강제 가입	

환경개선, 교육지원 등의 관련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 언

우리나라 농업부분은 산업안전보건사에서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관계로 안전보건사업에 있어서도 논외였다. 사실 근로자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발달과정을 보면, 노동운동과 악성 직업병의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생겨나자 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작되었고, 80년대 들어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산업 안전보건법과 관련 조직들이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업 안전보건은 문제제기 집단이 전무하고 근로자에 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의 편입이 불가하여 지금까지 농업인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개념조차 형성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법령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제언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자격, 임무와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계류 등의 안전보건상 조치, 안전보건교육, 위험한 기구 등의 검사 등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보건관리로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농업안전보건은 농산업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고 있으며 농기계 촉진법, 농약관리법 등 농기자재 관리를 위한 규정들로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에 기준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농림어업인의 업무상재해를 보호하기에는 절대

적으로 미흡하므로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상보험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작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촉진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농업인 업무상재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 특별법은 매우 한시적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노동부 및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특성에 적합한 농작업안전보건 관련법을 제정하여 농업인 업무상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보상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보상금 역시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따라서 농업의 특성을 살린 정책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올해부터 1인 이상 법인 자영업자 가입을 허용하여 농업인 가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고용주인 동시에 근로자인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활동의 특성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정책보험을 개발하고 산업재해예방기금 등과 같은 별도의 정부재원을 확보하여 국가가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한 간접적 복지확대의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부분적으로 농촌지역주민의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일부 농산업에 종사하는 약 3만 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기계, 농약 등 농기자재의 관리와 농업인의 복지지원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의 연구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

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예방·관리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전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즉,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예방, 관리,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농업인의 업무상재해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초한 국가사업의 마련과 시행, 평가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교육, 사업지원이 동일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동일목표를 지향하는 원활한 협력구조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기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노동과 건강연구회.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에 관한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7
2. 강창용. 농기계사고의 경제, 사회적 비용 추계. 농촌경제 2004;27(2):1-20
3. 김신범, 박두용, 정진주, 임승빈, 이선화, 백도명. 한국사회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분석. 보건학 논집 2000;37(1):51-65
4. 김재영.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비용 추계: 1995-199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5.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1993-2004
6. 노동부. ILO 주요 협약집. 2000
7. 노동부. 2000년 산재보험사업 연보. 2001
8. 노동부. 산업보건기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02
9. 노동부. 200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04
10. 노동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설. 2004
11. 노동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2004
12.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의 직업성질환 관련 위해요인 영향평가 및 종합적 관리시

- 스템 개발. 2003
1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1차 워크숍 자료집. 2004
 1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림어업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 비교 분석 보고서. 2004
 15. 농촌진흥청. 농업인 직업성 질환관련 위험 요인 평가 및 종합적 관리시스템 개발. 2002
 16.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 업무계획. 2004
 17. 문옥윤. 한국의 산업보건. 서울, 고려의학, 1995
 18. 박두용. 21C 노동환경권 변화에 따른 산재 예방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산재신고처리절차 및 처벌 특별법 중심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 2003
 19.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한국 노동경제연구원, 2002
 20. 백도명. 1998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연계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2000, 쪽 251-276
 21. 백도명. 노동의 모든 측면과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노동과 건강, 노동건강연대, 2004
 22.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만성 질환편. 서울, 보건복지부, 2002
 23. 소영진. 정책딜레마와 조직의 대응 : 산업 안전보건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4
 24. 송재석. 농업에서의 산재보상보험 적용방안. 농촌생활과학 2003;24(4):77-82
 25. 신승엽. 한국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 농기계 안전성 향상기술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국제 워크숍 자료집. 농촌진흥청 농업공학 연구소, 2005, 쪽 25-45
 26. 심재운. 산업재해보상실무. 파주, 노문사, 2002
 27. 안옥선. 농부증 실태 및 관련요인. 농촌생활 과학 2000;21(2):37-43
 28. 이경숙, 김경란, 김효철, 김경수. 한국의 농작업 재해실태 및 연구동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전략 개발 국제 심포지엄. 수원, 농촌진흥청, 2005, 쪽 61-108
 29. 이남식. 특집-산업안전 산업공학에서의 산업 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교육. IE 매거진. 대한산업공학회 1996;3(1):22-25
 30. 이병국. 우리나라 직업병의 역사. 산업보건 1989;1:6-12
 31.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2002;27(1):7-14
 32. 조수현, 강대희, 김재용.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감시체계(1). 산업보건 1997;5:14-21
 33. 조수현, 강대희, 김재용.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감시체계(2). 산업보건 1997;6:37-49
 34. 조수현, 홍윤철, 임종찬, 장성실, 천병철.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의 계획과 관리. 대한산업의학회지 2001;13(1):17-37
 35. 조홍식. 참여정부의 농어촌복지 발전과제. 서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3
 36.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2005
 37. 주경식. 김한중, 이선희, 민혜영. 도시농촌간 의료이용수준의 분석. 대한예방의학회지 1996;29(2):311-329
 38.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2
 39. 피용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004;26(2): 313-330
 40. 홍성일, 정재일, 김종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 대한설비관리학회 2000;15(3):99-123
 41.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2002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대책. 2002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추진방안. 2003
 44.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사회의 산업안전보

- 건정책 연구. 2001
45.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년 산업재해원인조사. 2003
46. Calvert GM. Surveillance systems for agricultural illness and injuries in the United State, with an emphasis on pesticide poisoning surveillanc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ment of prevention strategy for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5, 191-222
47. Hamalainen P, Takara I, Saarela K. Gloval estimate of occupational accidents. Safety Science. 2005
48. Kermit GD. Understanding the ergonomic risk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 agricultural sect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ment of prevention strategy for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5, 3-58
49. McDuffie M. 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in workplace. Environment. Substantiality. LEWIS. 1995, 363-366
50. 노동부 조직 및 업무. [Cited 2005 Dec] Available form: URL:<http://www.molab.go.kr>
51. 농림부 조직 및 임무. [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maf.go.kr/index.jsp>
52. 농촌진흥청 조직 및 업무. [Cited 2005 Oct] Available from: URL:<http://www.rda.go.kr>
53. 보건복지부 조직 및 업무. [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mohw.go.kr/index.jsp>
54. 김동환, 윤석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필요성 및 인증동향. 2003 [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dnv.co.kr>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직 및 연구목표.[Cited 2005 Aug] Available from: URL:<http://www.kihasare.kr>
56.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보건 통계 - 연도별 경제손실액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1972-2002). 2004 [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kli.re.kr>
57.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직 및 기능.[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kosha.net>
58. ILO. Global strategy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clus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2003 [Cited 2005 Nov] Available from: URL:<http://www.ilo.org>
59.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s in focus_guidanc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direction series 03. 01. Wigston. 2003 [Cited 2005 Dec] Available from: URL:<http://www.iosh.co.uk>
60. ISO. ISO Management System, 2005 [Cited 2005 Aug] Available from: URL:<http://www.iso.org>